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4년 02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3월 0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투자신탁 수익증권. 단,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2018년 4월 14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집합투자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용어정리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2.29

신한SOL 200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5424]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본손실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기초지수와 상관계수 저하 위험, 상장폐지 위험,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해당 비율만큼 모두 포함하는 완전복제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배당락일에 KOSPI200선물을 활용하여 미수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 [KOSPI200 TR지수]x 10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기초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 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 가회사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투자신탁	없음	0.05	0.001	-	0.0820	8	17	26	46	105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4)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3.02.01 ~ 2024.01.31		2022.02.01 ~ 2024.01.31		2021.02.01 ~ 2024.01.31		2019.02.01 ~ 2024.01.31			
	연평균수익률	7.64		-1.16		-4.18		5.45		3.18	
	기초지수	7.59		-0.92		-3.86		5.55		3.28	
	수익률변동성	13.88		15.57		14.89		20.54		19.78	
	(주 1) 기초지수 : [KOSPI200 TR 지수]x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 5) 기초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1.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경 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박정원	1989	책임 운용역	37개	26,872 억원	10.28%	2.30%	2.51%	-2.50%	2년 9개월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 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ETF 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지수 수익률에 해당하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상승 혹은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와 의 상관 관계 저하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일간단위로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성과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일간단위로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일간 단위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 합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종하는 기초지수(KOSPI200 TR)와 유사한 수익률을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및 각종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 너무 작은 운용 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 해지 등)으로 인해서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가.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과 동일한 절차) 나.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하는 방법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방법	가.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매도 가능 (일반주식과 동일한 절차) 나.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주)(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모집(판매)기간	2018년 4월 14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모집(매출)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4년 03월 07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C542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X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모집기간 : 2018 년 4 월 14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2)모집장소 :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및 환매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장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 신탁원본액이 70 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 만좌 이상일 것
-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 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 사 이상일 것
- 자산의 구성요건

①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할 것

-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100 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며 종목수를 기준으로 100 분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 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② 상기 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 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 192 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 116 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인 경우 3 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편드의 거래상대방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상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은 이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C542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18.4.20	최초설정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021.02.05	사명 변경에 따른 변경 변경전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 변경후 : 신한자산운용(주)
2021.05.14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 : 박문기(책임운용역) 변경후 : 김지연(책임운용역)
2021.07.02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 : 김지연(책임운용역) 변경후 : 이진욱(책임운용역), 박정원(부책임운용역)
2021.08.27	ETF 브랜드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변경전: 신한 SMART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후: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1.21	위험등급 기준 변경(투자대상→변동성)
2022.06.10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 이진욱(책임운용역), 박정원(부책임운용역) -변경후: 박정원(책임운용역), 없음(부책임운용역)
2022.06.24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최초설정일~2022년6월26일까지 :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6월27일부터 :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2024.03.07	투자대상자산(파생결합증권)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18 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4.01.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박정원	1989	책임운용 역	37개	26,872 억원	10.28%	2.30%	2.51%	-2.50%	2년 9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 학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 석사 에프앤가이드 인덱스팀(17.08~21.03) 신한자산운용 ETF상품팀(21.03~21.06) 신한자산운용 ETF운용팀(21.07-현재)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 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전문운용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ETF 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024.01.31 현재):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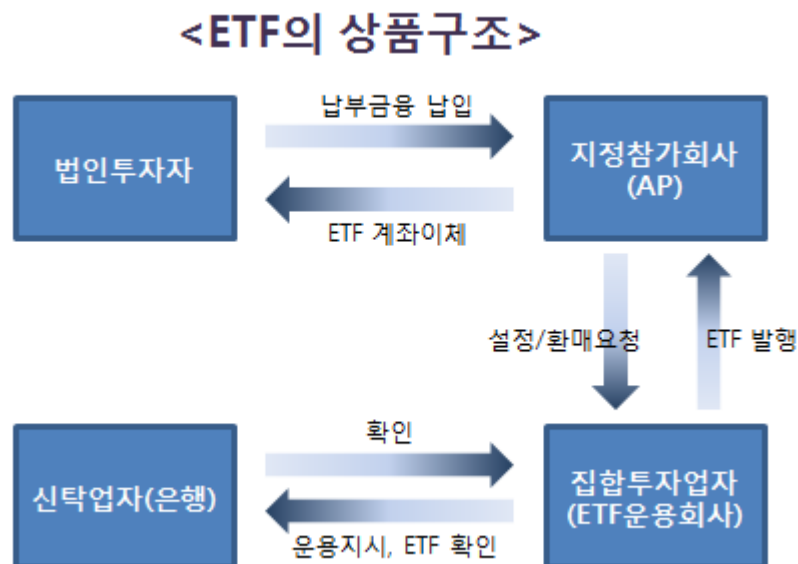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박문기	2018.04 ~ 2021.05
김지연	2021.05 ~ 2021.07
이진욱	2021.07 ~ 2022.06
박정원	2022.06 ~ 현재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박정원	2021.07 ~ 2022.06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구 분	주요 역할
집 합 투 자 업 자	ETF 운용 주체 지수추적을 위한 펀드자산의 설계 및 구성종목 교체
지정참가회사 (AP)	ETF의 설정 및 환매신청 창구 역할 주식바스켓(CU) 구성 의무 ETF와 현물주식 시장간의 차익거래 수행
유동성공급자 (LP)	AP역할 동시 수행 시장에서 호가제공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역할 수행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체결기관에 한함)
신탁업자	ETF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ETF 사무처리 업무 수행, NAV계산, ETF 설정, 환매 정산금액의 산출)
투 자 자	ETF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 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④	파생결합증권	1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의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⑤	증권의 대여 ^{주1)}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⑥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의 차입 ^{주2)}	20%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 345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일부 상환이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투자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추적대상 지수관련 투자	-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OSPI200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지수 산출방식 및 개요 ※ 기초지수 : KOSPI200 TR지수 - 지수개요 : KOSPI200지수 구성종목의 세전 현금배당이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배당수익률이 가산된 총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 - 지수산출기관: 한국거래소(KRX)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11년 1월 3일, 273.81pt - 정기변경 : 연 2회 (6월 및 12월)
--

주 1) 상기 기초지수에 대한 설명은 작성기준일 현재의 내용이며 해당 지수 산출기관의 필요, 산출방식 변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ETF)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주소	비고
지수관련정보	http://index.krx.co.kr	지수발표기관(한국거래소)
PDF내역	http://www.soletf.co.kr	SOL ETF 전용 홈페이지
ETF관련 일반정보	http://etf.krx.co.kr http://www.soletf.co.kr	한국거래소 ETF전용 홈페이지 SOL ETF 전용 홈페이지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해당 비율만큼 모두 포함하는 완전복제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배당락일에 KOSPI200 선물을 활용하여 미수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중 부도 가능성, 유동성 및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표본추출(Sampling)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외된 종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증권의 대여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투자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 시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 시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 등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오차의 정도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기초지수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기초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기초지수 : $[KOSPI200 \text{ TR 지수}] \times 100\%$

※ KOSPI200 TR 지수

- 한국거래소(KRX)가 코스피 200 지수 구성종목의 세전현금배당이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배당수익률이 가산된 총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지수 수익률에 해당하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상승 혹은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와 의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일간단위로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상관관계 저하 위험	성과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일간단위로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일간 단위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 합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종하는 기초지수(KOSPI200 TR)와 유사한 수익률을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및 각종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 너무 작은 운용 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 해지 등)으로 인해서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괴리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가격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NAV(순자산가치)와 연동하여 가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적은 거래량,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의 재정거래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기초자산간 거래소의 차이, 기초자산의 시장접근제한 등으로 인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종가와 NAV 사이에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경우 실제 매매 과정에서 수익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투자자금회수 곤란위험	개인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게 되면 당해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거래소 상장지수펀드의 거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의 룰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배당을 재투자하므로 해당 투자신탁에서는 분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구성 종목의 배당락일에 예상배당금(세전)을 재투자하고 배당확정시 이를 보정하므로 일정부분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세 적용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시행령(26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13조)에 의하여 보유기간과세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 환매 또는 매도 시 누적된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액에 대해 일괄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초지수가 Price Return인 ETF와는 과세유형이 다릅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해당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N 투자위험	본 펀드의 투자대상인 ETN 은 기초지수의 성과와 무관하게 무보증, 무담보 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ETN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N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가 단기간 내에 급등락하거나 가격제한폭/시차 차이, LP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시장 요인으로 높은 괴리율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특정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롤오버 비용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지수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상장폐지위험, 기초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N 발행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또는 구성자산의 비중 등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의 투자목적과 상이하게 기초지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기타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시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특히, 확대된 매매 호가 스프레드, 가격의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도하게 제한된 시장 또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16.27%이며 2 등급**으로 분류됩니다.ⁿ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변경내역>

투자위험등급	기간	변경사유
2 등급	2018.04-2021.12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에 따른 위험등급 부여
2 등급	2021.12-현재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등급 부여

※ 상기 기간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펀드결산일 기준(해당기간 내 각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 측정)의 기간을 의미하며, 변경된 위험등급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의 결과계산에 따라 부여되는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 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2. 설정을 통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150,000 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1) 설정단위 (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150,000 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150,000 좌 또는 그 정배수(300,000 좌, 450,000 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 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2)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 등을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수탁회사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 시 30 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4 시 30 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유가증권 및 현금을 말합니다)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설정을 청구하는 날(이하 “설정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과 100 분의 95 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상기 나.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입(이하

“대납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납금전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금전 산출 : 설정청구일의 미구성자산의 총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전으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 대납금전의 정산 : 대납금전의 비율이 상기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금전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함.

라. 투자자가 상기 '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명의로 위탁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입금 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상기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가액 정산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한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평가가액보다 적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사. 상기 가. 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 상기 가. 내지 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 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의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에 수익증권 설정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내역과 기존에 설정청구를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4) 설정절차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 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설정청구 내역 확인 및		수익증권

	(한국 거래소 등)	승인		발행(전자등록기관 일괄예탁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 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입확인

1.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2. 설정청구일(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전자등록기관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4. 설정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수탁회사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수익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시간을 T+2 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1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해지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 단위의 배수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 시 30 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 시 30 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가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환매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상기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의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상기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로 인하여 상기 5)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그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8) 상기 7)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 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 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수익 증권인출 및 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한국 거래소 등)	환매청구 내역 확인 및 승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 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 이체 및 이체 내역 확인

1.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2. 환매청구일 (T일)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3.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전자등록기관원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4. 환매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수탁회사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수익자는 그 즉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수탁회사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나.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의하여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가.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나. 아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 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의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영업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에 동 기준가격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기준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방문하시어 기준가격을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게시·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단, 채권평가회사가 가격제공이 곤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⑨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 자입자 보수	지정참 가회사 보수율	신탁업 자보수	일반사 무관리 보수	총 보수	(동종유 형총보 수)	기타비 용	총보수 및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거 래비용
신한SOL20 0TotalRetu m증권상장 지수투자신탁[주식]	0.029	0.001	0.010	0.010	<u>0.050</u>	-	0.032	<u>0.082</u>	<u>0.082</u>	0.0114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다만, 최초 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년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1,4,7,10월의 말일까지로 함.					-	-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 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증권 거래비용	23,645
금융비용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 2023.01.01 ~ 2023.12.31]

(주 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8	17	26	46	10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	17	26	46	10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단,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상당히 낮아질 경우 해외 자산 매매 및 보관 등을 위한 기타 비용(해외보관대리인 비용, 해외거래예탁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 등의 지급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현금화하여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 : 신탁계약해지 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지급 순자산가치 : 상환금을 지급하는 직전일의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형태 : 당해 잔존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대상 수익자 : 신탁계약해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상환금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신탁계약해지 기준일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 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3 조에 의거하여 2010 년 7 월 1 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로 보다 자세한 ETF 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ETF 를 증권시장에서 2 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ETF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합니다. (단, 같은 날 매도되는 ETF 는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 기(2023.01.01 - 2023.12.31)	선진회계법인	적정
제 5 기(2022.01.01 - 2022.12.31)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4 기(2021.01.01 - 2021.12.31)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통합 재무상태표			
항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3.12.31)	(2022.12.31)	(2021.12.31)
운용자산	217,131,399,221	194,575,824,186	323,780,542,307
증권	212,808,883,475	190,229,729,315	321,309,315,64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322,515,746	4,346,094,871	2,471,226,66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84,870,746	3,031,222,203	4,131,857,968
자산총계	218,716,269,967	197,607,046,389	327,912,400,27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8,429,701	2,472,764,908	273,165,740
부채총계	58,429,701	2,472,764,908	273,165,740
원본	171,225,340,500	190,923,831,000	242,442,960,000
수익조정금	-6,025,371,641	-7,383,896,639	-12,561,358,848
이익잉여금	53,457,871,407	11,594,347,120	97,757,633,383
자본총계	218,657,840,266	195,134,281,481	327,639,234,535
통합 손익계산서			
항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3.01.01-2023.12.31)	(2022.01.01-2022.12.31)	(2021.01.01-2021.12.31)
운용수익	49,821,958,781	-55,384,949,173	22,354,814,001
이자수익	96,142,341	59,299,169	7,879,172
배당수익	3,250,451,586	4,872,217,545	8,375,828,183
매매/평가차익(손)	46,475,364,854	-60,316,465,887	13,971,106,646
기타수익	53,342,934	68,223,240	78,946,346
운용비용	86,869,909	89,563,966	148,777,875
관련회사 보수	82,926,899	85,039,346	143,283,865
매매수수료	3,943,010	4,524,620	5,494,010
기타비용	106,599,323	91,429,174	174,792,451
당기순이익	49,681,832,483	-55,497,719,073	22,110,190,021
매매회전율	3	6	5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 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 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6) 기타수익에 포함되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6기 53.34백만원, 5기 68.22백만원, 4기 78.95백만원 발생)

주 7)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6기 0백만원, 5기 0백만원, 4기 0백만원 발생)

주 8) 매매회전을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15,889	8,585 백만원	217,309	6,028 백만원	202,880 백만원	2.97	12.30

주 9)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 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SOL200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3.01.01 - 2023.12.31)			전기(2022.01.01 - 2022.12.3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4,610	4.3377	0.0297	29,514	9	0.0293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39,434	3.9430	0.01	45,249	5	0.01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 대차, 콜 등)	98,947	15.3640	0.0155	142,667	6	0.0042
합계	152,991	23.6447	0.0155	217,430	19	0.0088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1.01 - 2021.12.31	0	3,622	0	2,522	0	3,089	0	3,276
	2022.01.01 - 2022.12.31	0	3,276	0	2,112	0	2,882	0	1,951
	2023.01.01 - 2023.12.31	0	1,951	0	838	0	1,100	0	2,187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2024.01.31 현재 / 단위: %]

구분	최근 1년 2023.02.01 ~ 2024.01.31	최근 2년 2022.02.01 ~ 2024.01.31	최근 3년 2021.02.01 ~ 2024.01.31	최근 5년 2019.02.01 ~ 2024.01.31	설정일 이후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7.64	-1.16	-4.18	5.45	3.18
비교지수(%)	7.59	-0.92	-3.86	5.55	3.28
수익률 변동성(%)	13.88	15.57	14.89	20.54	19.78

(주1) 기초지수: KOSPI200 TR*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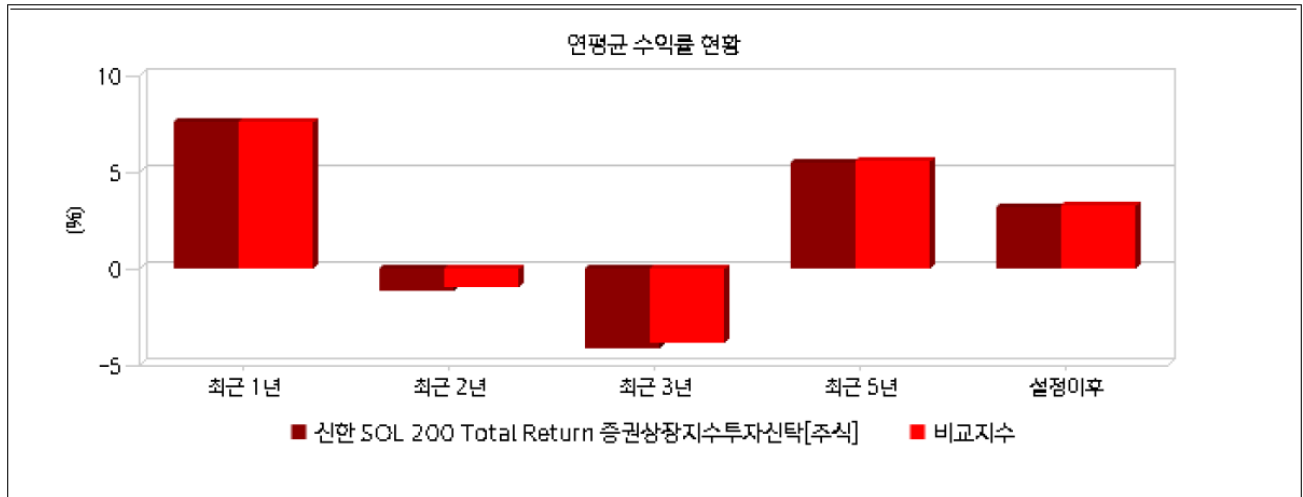
(주2) 기초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6)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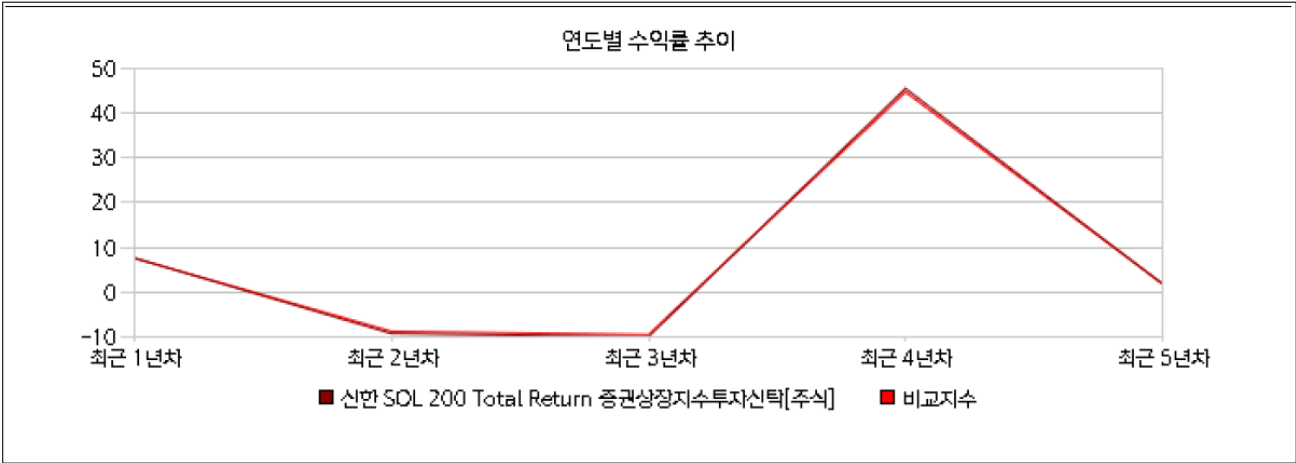
[2024.01.31 현재 / 단위: %]

구분	최근 1년차 2023.02.01 ~ 2024.01.31	최근 2년차 2022.02.01 ~ 2023.01.31	최근 3년차 2021.02.01 ~ 2022.01.31	최근 4년차 2020.02.01 ~ 2021.01.31	최근 5년차 2019.02.01 ~ 2020.01.31
(신한 SOL 200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	7.64	-9.24	-9.94	45.52	1.84
비교지수(%)	7.59	-8.76	-9.49	44.74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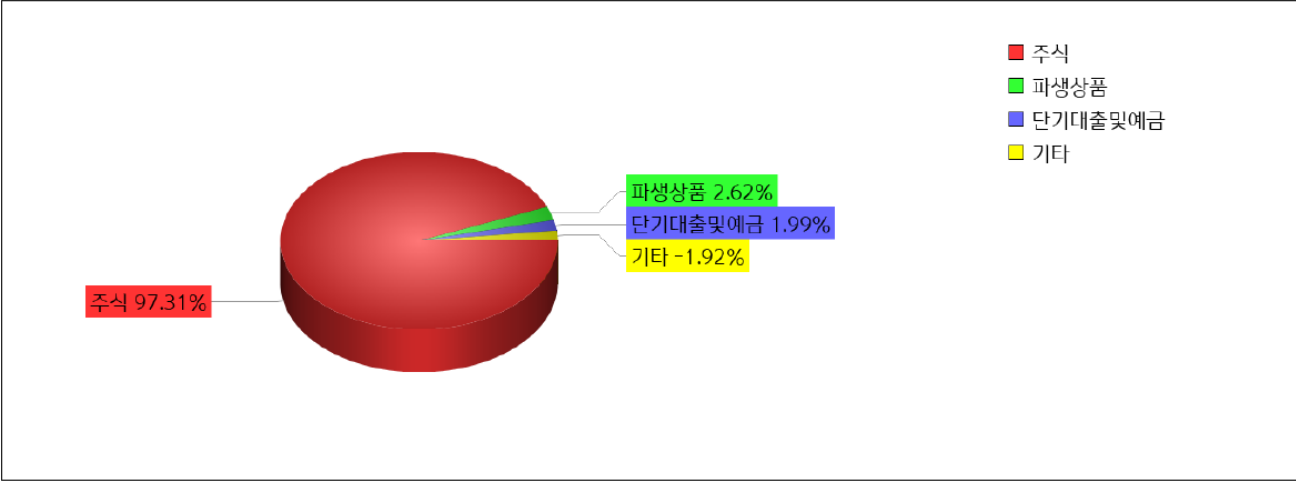
(주1) 기초지수: KOSPI200 TR*100%

- (주2) 기초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수익률 기재 방식
6개월 미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 연환산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4.01.31 현재 /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2,036	0	0	0	55	0	0	0	0	42	-40	2,092
	(97.31)	(0.00)	(0.00)	(0.00)	(2.62)	(0.00)	(0.00)	(0.00)	(0.00)	(1.99)	(-1.92)	(100.00)
합계	2,036	0	0	0	55	0	0	0	0	42	-40	2,092
	(97.31)	(0.00)	(0.00)	(0.00)	(2.62)	(0.00)	(0.00)	(0.00)	(0.00)	(1.99)	(-1.9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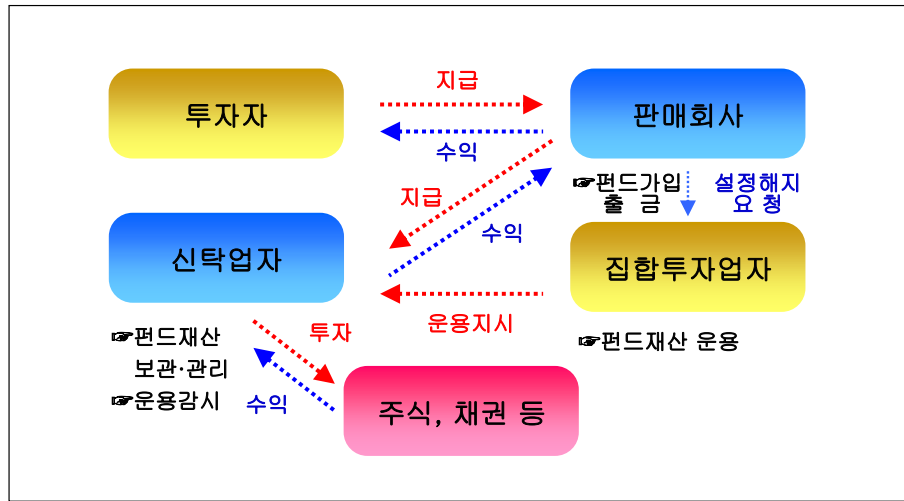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18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회사 연혁	2022.01 신한자산운용(주)이 신한대체투자운용(주) 흡수합병 2021.01 사명변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 → 신한자산운용(주))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본금	887억원
주요주주현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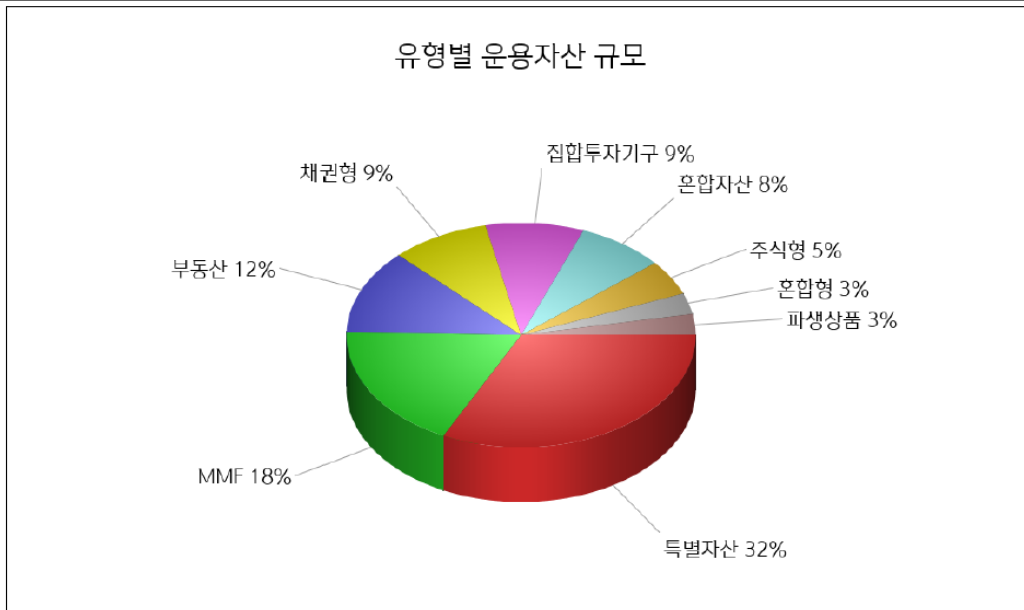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27기 2022년12월말	제26기 2021년12월말	구분	제27기 (22.01.01- 22.12.31)	제26기 (21.01.01- 21.12.31)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29,958	138,078	영업수익	174,242	107,598
유가증권	237,444	65,605	영업비용	120,886	64,59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07	2,846	영업이익(손실)	53,356	42,999
파생상품자산	622	22	영업외수익	289	281
기타자산	41,594	32,065	영업외비용	1,504	463
유형자산	6,086	4,14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이익	52,141	42,818
자산총계	319,511	242,76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 용	15,077	10,665
차입부채	7	31	계속사업이익(손실)	37,064	32,152
기타부채	88,512	40,150	중단사업이익(손실)		
부채총계	88,519	40,181	당기순이익(손실)	37,064	32,152
자본금	88,667	75,374			
자본잉여금	59,980	29,177			
자본조정	306	3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7	-665			
이익잉여금(결손금)	82,877	98,392			
자본총계	230,993	202,579			
부채와자본총계	319,511	242,760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1.31 현재 / 단위 : 억원) (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파생상품					
수탁고	25,738	13,109	47,709	45,053	15,515	62,747	162,120	41,900	93,709	507,60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대표전화 : 1588-5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kr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대표전화: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번지	02-399-335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자산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 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 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계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 217 조제 3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 호 및 6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 2 항 내지 제 3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 1 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 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 2 항 내지 제 3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계약 제 35 조 제 4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4)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2023.02.01 - 2024.01.31)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신한투자증권(매매)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17,997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2023.02.01 - 2024.01.31):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주)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리서치의 양과 질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거래 실행력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비용/수수료 구조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신용과 평판의 질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